

빈집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위·수탁 업무협약서

함양군과 한국부동산원은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4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6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함양군의 효율적인 빈집정비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과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경상남도 빈집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및 활용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수행원칙) ① 한국부동산원(이하 “부동산원”)은 빈집정보시스템(이하 “시스템”)을 구축하여 함양군에 사용권한을 제공한다. 단, 함양군에서 요청하는 경우 경상남도에 사용권한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부동산원은 함양군의 업무를 대행하여 시스템을 개발·운영하고 관리자 교육 및 시스템 유지·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, 「농어촌정비법」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스템을 구축·운영 하여야 한다.

제3조 (비용) ① 함양군은 본 협약의 협약일로부터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.

② 제4조제2항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또는 협약기간 만료 후 협약을 갱신할 경우 부동산원과 함양군이 상호 협의하여 시스템의 사용 비용을 정한다.

제4조 (협약기간)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협약의 연장 조건은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.

제5조 (빈집정보의 제공 범위) ① 부동산원은 함양군에 빈집정보를 제공한다.

② 빈집정보는 빈집실태조사가 완료된 빈집의 소재, 빈집의 등급 및 공간정보(GIS) 등 관련정보를 제공한다.



제6조 [기초정보] ① 함양군은 부동산원에게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4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6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의 빈집 자료 추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상수도 사용량 및 공·폐가 현황 자료
2. 소유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지방세 부과(고지) 내역
3. 기존 빈집 현황
4. 그 밖에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

②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범위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.

제7조 [빈집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등] ① 함양군은 시스템과 관련하여 생산·관리하는 정보의 유출 방지 등 보안 관리를 위해 시스템 담당자 중 한명을 시스템 계정의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보안책임자는 생산·관리하는 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함양군과 부동산원은 생산·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, 정보 보안을 준수한다.

제8조 [정보의 소유자] ① 함양군이 시스템으로 생산한 정보를 소유한다.

② 부동산원은 빈집통계의 작성, 활용 및 정책지원 등을 목적으로 시스템으로 생산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9조 [성실의무 등] ① 부동산원은 함양군이 시스템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·보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함양군과 부동산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대외감사 등 외부에 정보공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0조 [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책임] 함양군은 부동산원에 부동산원이 본 협약서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입게 된 손해·손실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 [협약의 해지] ① 함양군과 부동산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서 규정한 제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본 협약은 해지된다.

③ 부동산원은 협약이 해지된 경우 함양군에서 지정한 시스템의 위·수탁 기관이나 자체 개발한 정보시스템으로 정보를 이전해야 한다.

④ 부동산원은 협약이 해지된 날부터 제3항에 따라 정보 이전을 완료하는 날까지 관리 책임을 지며, 정보이전 완료 후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.

제12조 [기타사항]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한다.

② 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과 부동산원 상호간 협의에 의하고,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고 관계법령이 없으면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.

③ 본 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④ 본 협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함양군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본 협약의 성립을 위해 함양군과 부동산원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8월 31 일

 한국부동산원

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



 함양

함양군수 진병영

